

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6] <개정 2023. 11. 27.>

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(제115조제5항 관련)

1.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수수료 = 제경비 + 기술료 + 임금 + 검사기기감가상각비 + 여비
2. 제경비 및 기술료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의 대가기준 중 제경비 및 기술료의 최소금액을 적용한다.
3. 검사기기감가상각비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따라 실비를 계상하며, 기선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기선시설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.
4. 여비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다.
5. 임금은 다음 표와 같이 하되, 임금단가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의 대가기준에 따른다.

측 량 기 기		단 위	임 금
트 랜 시 (데오드라이트)	특급 1급 2급	1대당	·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55퍼센트
	3급	1대당	·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40퍼센트
레 벨		1대당	·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55퍼센트
거 리 측 정 기		1대당	·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55퍼센트
토털스테이션	1급 2급	1대당	·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85퍼센트
	3급	1대당	·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70퍼센트
지 엔 에 스 에 스 (GNSS)) 수 신 기		1대당	·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80퍼센트
금 속 또는 비금속 관 로 탐 지 기		1대당	·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가의 85퍼센트